

[별표 3] <개정 2015.12.9.>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준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비고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4.9.2.>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